

호모미그란스 휘보

■ 2016년 상반기 학술대회

- 이주와 젠더 -

- 일시: 2016년 2월 26일 오후 2:00-6: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1503호

사회: 양재혁

1. 김지원(명지대) - 미국의 반일본운동과 한인여성의 이주 (1910-1924)
발표자: 김지원(명지대학교)
2. 김현미(연세대) - '국민' 개념의 구성과 '비국민' 여성 이주자의 법적 불안정성
3. 최향란(전남대) - 프랑스 기업의 이주여성노동자들
4. 나혜심(성균관대) - 이주시대와 여성의 깨어나기

■ 2016년 하반기 학술대회

- 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 부자유 노동, 이주, 문화변동 -

- 일시: 2016년 8월 18일(목) 14시
- 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관 718호

사회: 문종현(한양대)

1. 권윤경(서울대): 유색인 여성들과 아이티혁명기 자유의 여정: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바다 밑의 섬>을 통해서
2. 하영준(서울여대): 전체주의의 식민주의적 기원: 한나 아렌트와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
3. 윤영휘(광주대): 대서양 노예무역과 영 제국의 식민정책: 도덕자본, 디아스포라, 종교집단

■ 출간

이주사학회 기획, 신동규 엮음, 『영화, 담다 그리다 비추다 - 이민,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 사회』 (에코리브르, 2016)

통합과 공존을 목표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는 역설적인 현실이며 엄중한 경고를 던져주는 역사이다. 1943년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에서 2005년 파리 방리유의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16세기 이래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흑인 노예부터 21세기 유럽에 거주하면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 이주와 인종주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다문화 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일상에서 만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영화가 이주와 인종주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주와 인종차별을 다룬 15편의 다양한 영화와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를 통해 이 문제를 고민해 보려 한다.

- 서문 중에서

• 목차

1부 호모 미그란스의 역사와 영화

1. 홍용진 <킹덤 오브 헤븐> 공존과 공생의 논리
2. 조원옥 ‘홀로코스트 영화’ 돌아보기

2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

3. 하영준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대처 시대 파키스탄 이주민의 ‘인정투쟁’
4. 박단 <증오> 방리유를 통해 본 프랑스 내 이방인들
5. 이선희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를 통해 본 두 세계의 간극

3부 인종차별의 시선: 서구인들의 타자 바라보기

6. 문종현 <검은 비너스>에 나타난 사르키 바트만의 삶
7. 김정옥 <사기꾼> 아시아인에 대한 이분법적 인종 의식의 부상

4부 인종차별의 시선: 백인성과 인종주의

8. 오영인 <갱스 오브 뉴욕> 미국 인종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투영
9. 이찬행 <폴링 다운> 분노한 백인 남성의 로스앤젤레스 오디세이

5부 경계를 유랑하는 사람들

10. 권은혜 <기품 있는 마리아> “마약노새”, 모성 그리고 중남미 십대 여성의 미국 이주
11. 남옥정 <칠판> 낡은 칠판에 맡겨진 쿠르드족의 미래
12. 문경희 <토끼 울타리> ‘도둑맞은 세대’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공식 인정 및 사과 그리고 원주민과의 화해 논의

6부 새로운 국민 되기: 이민자의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13. 봉인영 <나는 중국인입니다> 중국 당대 다큐멘터리 영화 속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14. 신동규 <영광의 날들> 제2차 세계대전과 북아프리카 출신 병사의 정체성

7부 유대인, 영원한 이방인인가

15. 윤영휘 <불의 전차> 해럴드 에이브러햄스는 무엇을 위해 뛰었는가?
16. 박지현 <라운드업>, <바시르와 왈츠를> 인종 학살 역사에서 두 유대인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태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